

壬亂時의 功臣策勳考

李 貞 一*

I. 序 言

壬辰倭亂을 단순한 敗戰의 기록으로 해석하였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여러 각도의 壬亂史 再照明 작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倭軍의 기습적인 侵攻을 당한 初戰에서는 2개월만에 3都를 점령당하는 참패를 기록하였지만 차츰 戰列이 정비되면서 반격전이 시작되자 倭軍은 東南海岸으로 敗退할수 밖에 없었으며 해안에서 甕陳하며 再侵을 엿보다가 결국에는 승산 없는 싸움을 포기 철수하고 말았던 것이다.”

壬亂을 단순한 侵奪의 과정으로 볼때와는 달리 克服의 과정으로 再編하기 위하여는 종래와는 다른 여러 각도의 再糾明이 필요하리라 여겨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戰亂을 遂行·克服하였던 當亥 人物들에 대한 再評價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이 작업은 至難하고 또 방대한 작업이되리라 생각되어서 우선 본고에서는 亂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뛰어난 공적을 수립하여 亂後 調整에 의하여 策勳되었던 功臣들에 대한 성격 규명부터 해보려고 시도하였다.

倭亂이 끝난 후 倭亂時의 有功者에 대한 論功行賞은 亂3年後인 宣祖 34年 3月 시작되어 宣祖 37年 10月 完結되었다. 이는 3年 8個月에 걸친 難産이었다. 그동안 備邊司 및 功臣都監에서는 수십차의 회의를 거쳤고 그동안 功臣策勳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반복하여 논의되었다.

이리하여 宣祖의 義州播遷을 扈從한 有功者를 扈聖功臣으로, 力戰有

* 사학과 부교수

1) 許善道, 「壬辰倭亂論」, 『東洋學學術會議講演鈔』, 1984, pp. 457~459.

功者 및 請兵糧有功者를 宣武功臣, 李夢鶴의 亂을 평정한 有功者를 靖難功臣으로 각각 策勳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3功臣 중 對倭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扈聖功臣과 宣武功臣을 중심으로 그 策勳論議의 추이를 살펴보는 한편 채훈된 功臣의 성격을 살펴보려는 것이다.²⁾

II. 功臣策勳 論議의 始末

1. 최초의 功臣策勳 論議

壬亂 극복 유공자에 대한 논공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終戰 3年後인 宣祖 34年(1601) 3月 戊申日, 다음과 같은 宣祖의 傳教에 의해서였다.

「備忘記曰 壬辰年西行時 扈從人錄勳事有傳教 今賊已驅退 天將盡撤 卒哭已畢 領相亦出 可以舉矣 且我國將士 雖不能勳賊 然於其間 或不無力戰 有功之人 亦可詳察並錄」³⁾

이에 따르면 壬辰年西行時 이미 扈從人錄勳事가 下命되었으나 戰亂中이라 실행되지 못했고, 戰亂종결 직후에는 明軍의 철수 및 사망자에 대한 喪禮등 문제로 그것이 지체되었다가 이 시기에 그 문제를 논의하되 力戰有功人 즉 戰亂中 武功者를 아울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壬辰年에만 扈從人錄勳事가 下命된 것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宣祖 30年 8月 丁丑 즉 丁酉再亂時에도 下教되고 있었다.

「傳于政院曰 扈從上下人員 及戰功人等 傳前傳教 功臣磨鍊 以勸人心事 言

2) 功臣策勳에 관하여 전체적인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李炯錫의 『壬辰戰亂私』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3) 『宣祖實錄』 卷 135, 宣祖 34年 3月 戊甲條.

于備邊司」⁴⁾

이는 戰亂中의 일이라 실행되지 못하긴 했으나 왕실에 대한 계속적인 충성과 力戰을 독려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다.

이와 같이 거듭된 선조의 傳敎가 그대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다소 녹훈준비는 되고 있었다. 즉 임진년 당시에 扈從人 명단이 녹훈자료로서 작성된 것이다. 宣祖 34年 3月 공신책훈을 시행하라는 宣祖의 傳敎가 있자 그 다음날 領議政 李恒福이

「領相李恒福啓曰 伏見扈從人員 推恩之敎 前日大駕 駐西路時 下敎曰 自京城至義州扈從人書啓 其時 臣忝在本兵武 臣扈從 臣當書啓(下略)」⁵⁾

라고 上啓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시 兵判이었던 李恒福이 京城에서 義州까지 宣祖를 호종한 사람의 명단을 書啓하였다.

이제 임진년 당시 작성된 명단을 중심으로 호종공신들의 선정작업이 진행될 것은 不問可知的의 사실이겠다. 그런데 그 명단에는 약간의 곡절이 있었다. 그것은 宣祖가 命한 호종인 명단 書啓의 기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이 書啓작업을 담당했던 兵判 李恒福은,

臣爭之曰 上之所以有敎 不過欲知 終始爲國之誠也 假令中路有往還 豈可先略之」⁶⁾

이라고 하여, 宣祖의 본래의 의도가 시종일관 「爲國之誠」을 다한 자를 논공하려는 데 있는 만큼 중도에 往還한 사람도 일단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던 데 반하여

「往議于備邊司諸臣曰 事當如何 或者曰 自上必舉 自京城至義州云云者 聖意有在 其中路往還者 恐不當啓也」⁷⁾

비변사 諸臣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或者는 宣祖의 本意가 반드시

4) 『宣祖實錄』 卷 91, 宣祖 30年 8月 丁丑條.

5) 『宣祖實錄』 卷 135, 宣祖 34年 3月 己酉.

6) 注 5)와 同.

7) 注 5)와 同.

「自京城之義州」 시종일관 호종한 자를 鈔錄하라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兵判 李恒福은 「臣畢竟 只啓其一錄 意猶未釋 啓辭 未端 並及其由」⁸⁾ 즉 시종 호종자와 「中路往還者」를 따로 기록하여 始終 扈從者 명단만을 上啓하되 그 명단 아래 그 연유를 써두었는데 吏曹에서 「吏曹別中路往還人員 各於名下 懸錄並鈔以啓」⁹⁾하였다는 것이다. 李恒福의 이러한 上啓에 대하여 宣祖는 「答曰 此則議政時磨勸爲之」¹⁰⁾이라 회답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논쟁의 불씨로 남겨졌다.

이후 비변사는 宣祖의 傳敎에 따라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上啓하였다.

「備邊司啓曰 今日 臣等齊會相議 扈從人員 錄勸之事 則當初大駕 在永柔之時 令吏兵曹鈔錄 終始扈從上下員役 已爲啓下 當依此磨勸以啓矣(下略)」¹¹⁾

비변사는 호종인을 功臣으로 선정할 때 壬辰年 당시 吏兵曹에서 마련한 명단을 토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호종공신 선정논의의 기본원칙을 復命한 셈이다. 하지만 壬辰年에 吏·兵曹에 의해 작성된 單子는 宣祖를 호종한 사람만 포함되었을 뿐 당시 分朝했던 世子일행을 호종한 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변사는 다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上啓하고,

「且 廟社主及王世子扈從人員 當初俱是受點差往之人 此亦似當並錄 而時無啓下之事 何以爲之」¹²⁾

宣祖의 유히를 얻었다.¹³⁾ 이리하여 宣祖의 終始扈從人과 함께 世子扈從者도 호종공신에 포함된다.

그러나 宣祖는 이러한 범위에서 호종공신이 선정되자 강한 불만을 표

8) 注 5)와 同.

9) 注 5)와 同.

10) 注 5)와 同.

11) 『宣祖實錄』卷 135, 宣祖 34年 3月 辛亥條.

12) 注 11)과 同.

13) 注 11)과 同.

시하였다. 그것은 錄勳書啓가 올라가자 「前日錄啓單子 豫藏之 今下矣 人數頗與今此書啓不同」이라면서 壬辰年 당시 작성되어 宣祖가 보관하고 있던 單子를 통하여 備邊司에서 작성하여 올린 書啓의 수정을 추구하고 그 구체적인 문제로서 諸宮陪行人 일부 누락 사실을 지적한 점에서 엿볼 수 있다.

「諸宮陪行人 今書啓內 皆削去 然其中 或有仍存者 以同功一體之人 或存或削 未知其意 設使當削其名 既在於前日書啓中 所當稟定 而爲之事也」¹⁴⁾

이 기사는 「諸宮陪行人」이 削去되었음에 대한 宣祖의 직접적인 불만 표시를 내포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王權을 감안한다면 諸宮陪行人을 參錄하라는 지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자 비변사는 곧 啓文을 올려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上略) 取考吏兵曹所藏 永柔時書啓單子草 及戶曹扈從給料文書 則前因戶曹取稟公事 自上傳教內 大概諸宮下人物爲但此人等 往彼落後 而今則曰扈從云 扈從云不無虛僞之事 詳察爲之 已有傳教 故臣等誤認爲諸宮下人 各從諸宮而非專扈從之人 似與詳臣之從人者 與異所以有此傳教 不敢書啓矣 今承下教 極爲惶恐 更考諸宮下人單子 別錄以啓矣」¹⁵⁾

이로서 본다면 비변사는 호종공신을 선정하기 위해 吏兵曹에서 작성한 單子외에 戶曹에 있는 扈從給料文書를 살펴 보았는데 그중 戶曹에 내린 傳教에 諸宮下人을 포함시키지 말라한 것이 있었고, 또 호종인 가운데 虛僞者가 포함되어 있으니 詳察하라는 傳教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誤認하여 扈從之人만 書啓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다시 조사하여 別錄함을 말하고 있다.

결국 扈從功臣으로 책훈되는 대상에는 宣祖에 대한 충성뿐만 아니라 王室에 대한 충성도 포함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國家와 王朝의 범주가 아직 확연히 구별되지 못하는 朝鮮社會의 성격상 어쩔 수

14) 『宣祖實錄』 卷 135, 宣祖 34年 3月 辛酉條.

15) 『宣祖實錄』 卷 136, 宣祖 34年 4月 丁酉條.

없는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속에서나마 公正한 녹훈이 되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은 경주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論功行賞에는 「虛僞之事」가 없지 않기도 하고 또 功臣策勳 그 자체에 신뢰성이 의심스러울 때 그것은 王朝 통치에 대한 不信의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와 같은 측면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겠다.

「備忘記曰(上略) 兪泓則到博川 而自爲落後 歸於世子如此事 人可能之 其勤苦則至矣 而若曰 終始屬從 則未也 似不當並入 李夢元 李曄 朴承宗等 如此 當去之 大概 更如從實詳覈俾無虛僞之事」¹⁶⁾

宣祖는 兪泓이 宣祖를 호종하다 중도에 世子에게 간 것을 들어 호종 공신에 부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3人を 削去하고 더더욱 虛實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변사에서 「並付標以入 以上數人姑以衆論 詳覈以啓矣」¹⁷⁾이라 하여 일단 선조의 下命은 따르면서도 다시 衆論을 통하여 조사하겠다는 신중함을 보였다. 실제 비변사는 녹훈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더라도 호종기간 중 행적에 의혹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여부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했다. 예컨대 秦孝男은

「秦孝男 則當初 以自京至義州 錄啓矣 今則或以爲孝男於大駕出城之後 由黃海山路 而追及於平壤云 或以爲 分明自京 屬從而往云 大概此人 于係 諸宮之人 與外人蹤迹有間 臣等未能的知 自上 必或有洞燭之理 其終始屬從 與否敢稟」¹⁸⁾

즉 屬從初期 행적이 불명하여 비록 임진년 당시 작성된 명단에 있으면서도 宣祖의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였다.

한편, 公務로 인하여 終始屬從의 대열에서 이탈한 경우 그 행적이 확

16) 『宣祖實錄』卷 135, 宣祖 34年 3月 辛酉條.

17) 『宣祖實錄』卷 136, 宣祖 34年 4月 丁酉條.

18) 注 17)과 同.

인되면 비변사에 의해서 녹훈이 건의되기도 하였다. 柳永慶, 崔興源, 李元翼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崔興元 爲黃海道都巡札使 與從事官柳永慶 以一路諸事措置 先大駕往本道 興源受點 陪行王世子 永慶則扈從大駕 俱終始不離 李元翼 以平安道都巡察使 與崔興源等 一時受命 先往西路 又受點留守 平壤失中之後 入朝義州 又以本道觀察使 出屯順安 以此言之 則出入行朝 皆是因公往來 (中略) 詳議皆以爲 並宜參錄」¹⁹⁾

崔興源은 黃海道巡察使로서 道內諸事를 措置하느라고 宣祖의 扈從 대열을 이탈한 적이 있지만 世子가 分朝한 후 受點하여 世子를 陪行하였으며, 柳永慶은 從事官으로서 崔興源과 함께 黃海道の 諸事를 조치하기 위해 한때 호종대열을 이탈한 적이 있지만 그후 시종일관 호종하였다는 것이고, 또 李元翼은 平安道巡察使 및 觀察使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호종대열에 서지 못했다면서, 이들 모두가 公務로 인한 것인 만큼 정상을 참작하여 參錄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宣祖는 「崔興源等事 誠然矣 當依啓」²⁰⁾라 하여 모두 參錄을 허락하였다.

扈從功臣에는 이외에도 「赴京請兵使臣」 즉 明에 兵糧의 援助를 청하여 성사시킨 공로자가 포함된다. 이는 녹훈 논의의 傳敎가 있는 직후 「且赴京請兵使臣 不可不錄其功」²¹⁾이라는 宣祖의 命에 의해 호종공신이란 측면에서 선정되기 시작하였다.

「且赴京請兵使臣鄭崑壽 書狀官沈友勝 則已才扈從單子 無容更議 此外知中樞府事申點 書狀官鄭期遠 在燕京時 聞變登時籲呼以爲 天朝發兵之本 今以

19) 注 17)과 同.

20) 注 17)과 同. 이때 李覺도 다음과 같이 녹훈이 건의되었지만 「李覺當初 王世子陪時單子內參錄 而今此會議 或以爲 因事出去 遂不得仍爲陪行云 臣等以爲 若此則與自京城至定州 終始不離者有異 參錄未安 詳考政院日記 及參以聞見 則覺於壬辰十二月 陪王世子 致尋岡 自大朝 除爲魚川察訪 又除大同察訪 以病見遣 王世子方在寧邊仍爲陪侍 其間雖有往來之事 皆是因公出入 而別無自爲落後之事」 宣祖는 「李覺 壬辰十二月 陪王世子 到尋岡云 未審其前 不離從之乎」라 하여 행정상의 의혹이 있음을 들어 윤허하지 않았다.

21) 「宣祖實錄」卷 135, 宣祖 34年 3月 辛酉條.

傳教之意觀之 崑壽登之外 申點等功 似當並錄 敢此並稟」²²⁾

비변사는 「赴京請兵使臣」과 관련된 上啓에서 鄭崑壽와 沈友勝은 請兵의 功이 있지만 이미 扈從單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更議」할 필요가 없다 하고 知中樞府使申點과 書狀官 鄭期遠의 녹훈을 추천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申點은 행적중에 의혹스런 바가 있다 하여 윤허받지 못했다.²³⁾

請兵糧은 宣祖를 중심으로 한 조정 신료들이 가장 크게 평가한 공적이었다. 하지만 君臣之義나 救國之誠에 의혹스런 행적이 있어서는 아니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이 무렵 논의된 호종공신의 범위는 대략 宣祖를 終始 扈從한 자, 王世子 및 諸宮의 陪行人, 그리고 請兵使臣이며, 이에 해당하는 大臣, 各司의 臣僚와 內侍 및 각종 하인 등 신분 및 관직고하의 구별이 없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호종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은 자이지만 조정의 命으로 公務를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이탈했을 경우, 행적상의 의혹이 없으면 포함되고 있었다.

扈從功臣이 선정되면서 그 元勳도 결정되었다. 元勳은 首功者이기도 하지만 해당 공적의 내막을 소상히 알고 있어 선정된 功臣의 등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원훈은 호종기간 중 宣祖의 돈독한 신임을 받은 자이어야 했다. 선조는 그러한 원훈으로 李恒福과 鄭崑壽를 지목하였다.

「且領相 以都承旨 隨豫左右不離 又爲兵判 臨難盡瘁 鄭崑壽 請得天兵而

22) 『宣祖實錄』卷 136, 宣祖 34年 4月 丁酉條.

23) 上揭 22)와 同.

24) ① 『宣祖實錄』卷 135, 宣祖 34年 3月 辛亥.

備辺司啓曰 (上略) 名曰扈從 則均有羈絆之勞 其令輕重高下 無憑等第 錄勳之事 必有一二三等之差 而令此諸臣 何所憑據 而第其高下乎 須仰承睿裁 乃可磨勳

② 『宣祖實錄』卷 136, 宣祖 34年 4月 丁酉.

備辺司 以大臣憲啓曰 (上略) 且扈從等第 必待元勳 乃可磨鍊 故前日亦請明降 而自上時未指名 以下伏俟明降

來 予意鄉二人 當爲元勳」²⁵⁾

李恒福은 都承旨 및 兵判을 역임하면서 선조를 보필한 공로가 인정된 것이고 鄭崑壽는 明의 援軍을 請한 功이 인정된 것이다. 이들 2人은 수차례에 걸쳐 선조에게 固辭의 뜻을 전하지만 선조의 允허를 받지 못했다.²⁶⁾

선조는 倭賊을 몰아내고 국토를 회복한 것이 모두 扈從의 功勞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조의 인식은 이 무렵 논의되고 있던 扈從功臣의 稱號 결정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扈從功臣의 칭호는 「忠勤貞亮竭誠効節扈聖」으로 정했는데 이에 대하여 宣祖는 다음과 같이 下敎하고 있었다.

「以備忘記傳曰 觀前日扈從功之號(忠勤貞亮竭誠効節扈聖)則無恢復底意…崎嶇艱險 顛沛流離 而百折不回 伸大義於天下 請天兵而討賊 恢復疆土 使宗社遷于都 未知此誰之所爲乎 非扈從諸臣之功乎…其功臣之號 舊宜於前規之外 量加四五字 以別異於他功 而添入恢復之意爲當 卿等義不可辭…且扈聖之聖字 此雖在不例稱之 泛言而此 乃賜號 或駕字 或代以他字」²⁷⁾

정해진 호종공신 칭호에는 「恢復」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으니 그러한 의미를 포함시키라는 것과 「扈聖」의 聖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글자를 찾아보라는 傳旨였다.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선조는 壬亂克服은 오로지 明兵의 덕분이라는 본래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와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호종공신에게 그 공로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는 것으로서 선조가 얼마나 호종공신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錄勳都監에서는 후자, 즉 「扈聖」의 聖字 사용은 前代에 「護聖」이나 「衛聖」으로 사용한 예가 있으므로 「不以爲嫌矣」하나 선조의 傳旨대로 「改定亦無妨」이라 하면서도 전자, 즉 「恢復」의 의미를 추가하라

25) 注 22)와 同.

26) 『宣祖實錄』卷 137, 宣祖 34年 5月 朔 戊戌條 및 同年 同月 己亥·庚子條 참조.

27) 『宣祖實錄』卷 137, 宣祖 34年 5月 庚戌.

는 점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사양하였다.

「錄勳都監啓曰…若曰 自京城至義州 隨大駕而奔走云 則於臣等之心 庶幾小安 而至論恢復大計 實出於聖算之得宜 汗馬追殺之力 則各道諸將 或能小補於萬一 而一時從臣 有何力焉 一意扈駕之外 若加以恢復之意 則決非臣等所敢當者 又豈敢加之數字 軼駕前代烈勳之上也」²⁸⁾

「恢復大計」를 논한다면 그것은 실로 「聖算之得宜」에서 비롯된 것이고 「汗馬追殺」은 各道에 있던 諸將의 공로일진대 어찌 호종신료들이 그러한 칭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선조 역시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明軍을 講한 공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사정 하에서 그 공로를 호종신료의 功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는 선조의 傳旨가 재차 하달된 것이다.²⁹⁾ 이 논의는 그 후로 며칠간 계속되었지만³⁰⁾ 결론을 얻지 못한 가운데 공신채훈 논의의 중단과 함께 더 이상 거론되지 못했다.

한편 宣祖 34年 3月 甲申 傳敎에서 扈從功勞者와 함께 녹훈하도록 되어 있던 宣武功臣은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이러한 조짐은 애초 宣祖의 녹훈 傳敎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宣祖 34年 3月 甲申日 傳敎에서 「我國將士가 비록 倭賊을 절멸시키지는 못했지만 그간에 力戰有功人이 없지 않으니 역시 상세히 살펴서 (호종공신 單子에) 並錄하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 속에는 宣武功臣에 대한 宣祖의 입장이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壬亂기간에 力戰有功人이 더러 있지만 그들에게 倭賊을 격퇴시킨 功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扈從功臣에 並錄되는 공로, 즉 독립적인 공적으로서 宣武功臣을 채훈하려는 것이 아니고 扈從에 부차적인 功으로서 論功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 점은 녹훈 傳敎가 하달된 지 며칠 후 備邊司에서 力戰有功人 녹훈

28) 『宣祖實錄』 卷 137, 宣祖 34年 5月 壬子.

29) 上揭의 錄勳都監啓에 대한 宣祖의 答曰 참조.

30) 『宣祖實錄』 卷 137, 宣祖 34年 5月 癸丑 및 丙辰條 참조.

을 거론하자 내린 宣祖의 傳敎에서 재차 확인된다.

「지금 倭賊이 평정됨은 오로지 天兵에 힘입은 것이고 우리 將士는 혹 天兵의 뒤를 따르거나 혹 요행으로 零落한 倭賊의 首級을 얻었을 뿐 일찌기 한 놈의 왜적 수급도 베지 못했고 하나의 적진을 함락시키지도 못했다. 그중 李舜臣·元均처럼 해상에서 적을 섬멸한 것과 權慄의 행주 승리가 조금 表表한 것이다.」³¹⁾

이 傳敎의 본래 의도는 이순신·원균·권율을 원훈으로 삼으라는 점에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力戰有功人을 선조가 어떠한 시각에서 녹훈하려는 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宣祖가 朝鮮軍의 武功을 극속하게 인정하는 입장에서 將帥 3人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무렴 조정에서 壬亂中 力戰有功者로서 李舜臣·權慄·元均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에는 후세의 인물평가에서 元均이 다른 2人과는 달리 「만고의 역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³²⁾

이들 3人은 이후 공신책훈 논의에서 宣武功臣의 元勳으로 확정되지만 이 무렵의 논의에서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다. 이들 3人은 이미 전사했으므로 선무공신 책훈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고, 또 곧 이어 공신책훈 논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무렵의 공신책훈 논의는 전반적으로 호중공신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임난극복에 대한 宣祖의 조정신료들에 대한 인식과, 임난중 自他가 공인하는 武將들이 모두 전사한 상태에 초래된 것이라 보아 무방할 것이다.

공신책훈 논의는 宣祖 34年 3월에 시작되어 同年 5月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직은 선정된 功臣의 규모 전체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논의의 진행에 특별한 문제가 야기된 적은 없었

31) 『宣祖實錄』卷 135, 宣祖 34年 3月 壬子
 伝伝曰(前略) 今此平賊之事 專由天兵 我國將士 不過或隨從天兵之後 或行得零賊之頭而已 未賞賊一賊首 賊一賊陳 其中如李元二將 海上之捷 權慄幸州之捷 差强表

32) 本稿 제2장 참조.

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돌연히 행해진 禮曹判書 柳根의 上筭로 인하여 공신책훈 논의가 중단된다. 柳根은 上筭을 통하여 「褒嘉之典」이 먼저 宣祖에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 邊防대책이 錄功보다 우선 세워져야 된다는 것, 旱災로 秋收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錄功할 때가 아니라라는 것을 들어서 공신책훈을 연기하도록 請했다.³³⁾

이 筭子是 애초 宣祖의 부분적인 共感을 얻는데 그쳤을 뿐, 允許를 얻지는 못했다.³⁴⁾ 그런데도 이것이 공신책훈 논의의 중단으로 확대된 것은 元勳 李恒福·鄭崑壽가 柳根의 筭子의 내용을 전해듣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國政처리능력 부족으로 연계하여 그 책임으로 待罪하겠다는 입장 때문이었다.³⁵⁾

宣祖는 일에 先後輕重이 있기는 하지만 國事를 전제하고 공신책훈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並行하는 것이므로 너무 마음쓰지 말라는 뜻을 전하여 진행중인 공신책훈 논의를 계속하도록 했지만,³⁶⁾ 領議政 李恒福과 西成君 鄭崑壽는 두번에 걸쳐 辭退를 請함으로써³⁷⁾ 마침내 「何必強焉 卿等量處」³⁸⁾라는 宣祖의 양보를 얻고 「臣等感激而退」³⁹⁾라고 復命함으로써 사퇴를 관철시켰고⁴⁰⁾ 이들 元勳의 官職 사퇴로써 그간 진행되어 온 공신책훈 논의는 중단되었다.⁴¹⁾

2) 功臣策勳論議의 再開

扈從功臣의 元勳인 李恒福과 鄭崑壽의 官職 사퇴로써 宣祖 34年 5월에 중단되었던 공신책훈 논의는 거의 1年 後인 同王 35年 4월부터 再開되

33) 『宣祖實錄』 卷 137, 宣祖 34年 5月 丙辰條 참조.

34) 上揭 5月 丙辰條 참조.

35) 『宣祖實錄』 卷 137, 宣祖 34年 5月 丁巳條 참조.

36) 上揭 5月 丁巳條 참조.

37) 前揭 5月 丁巳條 참조.

38) 前揭 5月 丁巳條 참조.

39) 前揭 5月 丁巳條 참조.

40) 前揭 5月 丁巳條 참조.

41) 『宣祖實錄』 卷 137, 宣祖 34年 5月 戊午條에 行副護軍 洪可臣은 扈從·力戰人 策勳 논의가 「以非時停止」되었으니 李夢鶴의 亂 진압유공자 策勳도 정지하고 錄勳都監을 혁파하자고 상서하여 宣祖의 允허를 받았다. 이로써 3공신 策勳 논의 전체가 중단된 것이다. 그후 『宣祖實錄』 卷 138, 宣祖 34年 6月 朔 丁卯 左議政 金命元은 策勳 논의의 再開를 啓했지만 宣祖의 允허를 받지 못했다.

어⁴²⁾ 同王 37年 10月 확정되기에 이른다. 그간의 논의는 유형별로 진행 된 것이 아니고 문제의 제기에 따라 수시로 논의 검토되고 있었지만 논의의 편의상 扈聖과 宣武로 나누어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扈從功臣책훈과 관련하여 논의된 문제는 대체로 內官下人과 王世子 및 「因公出外」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內官下人을 보면 功臣都監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內官名在單子者 二十五人 醫官·理馬·司僕·牽馬衛等 名在單子 而擬議於翊運之列 似缺安當 何以爲之」⁴³⁾

호종공신의 單子에 포함된 內官은 25人인데, 이중 醫官·理馬·司僕·牽馬衛등이 호종공신에 책훈됨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功臣都監의 啓에 대하여 宣祖는 「大概扈從之人 臨難忘身 終始扈從 豈有貴賤 當錄翊運之列」⁴⁴⁾이라하여 일축하였다. 이 무렵 下人으로서 單子에 포함된 자는 宣祖를 호종한 자로서 守門將(4)·養馬諸員內矣人(4)·司僕(2)·內需司別坐(10)·書吏(2)·司鑰(8)·書員(1)·諸員(1)·飯監(1)·使令(1) 합계 35명이고, 東宮을 호종한 자로서 司鑰(2)·別監(6)·飯監(1)·各色掌(1)·諸員(1)·書吏(2)·牽馬陪(2)·使令(2) 도합 17명이나 되어 功臣都監에서는 이들을 모두 參錄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다시 啓를 올렸다.⁴⁵⁾

그러나 宣祖는 임진년 당시 자신이 위급했던 사정을 토로하면서 朝官과 下人の 차등이 호종에 있어 구별될 수 없음을 밝혔다.

「傳曰 允 其時之未驚城知之 予欲辨之 則事體不可 今欲限東班實職 人臣之勳勞 果在於着帽着笠之異哉 其時認帽以爲功乎 然則紗帽籠頭 享厚祿而入朝者 何以或不出都門 咫尺島竄而走 或於中道 託故而亡 是不着紗帽人

42) 宣祖 35年 4月 鄭崑壽가 공신책훈 논의 재개의 하명을 받고 李恒福의 出任을 요청하여, 두 元勳이 이후의 공신책훈 논의를 주도해간다. (『宣祖實錄』 卷 149, 宣祖 35年 4月 辛亥)

43) 『宣祖實錄』 卷 159, 宣祖 36年 2月 己亥條.

44) 上揭書 宣祖 36年 2月 己亥條.

45) 『宣祖實錄』 卷 161, 宣祖 36年 4月 甲寅條.

乎」⁴⁶⁾

즉 朝官 중에는 都城을 나서기 전에 도망하거나 호종 도중에 도망하는 자가 있었음에 대하여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시종일관 자신을 호종하였던 下人에게 宣祖는 깊은 감사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功臣都監의 啓로써 宣祖의 의지를 바꾸지 못하자 이번에는 兩司가 啓하였다. 먼저 諫院은

「宦豎之徒 雖爲扈從 而終無可紀之功 如承傳色出納機務者一兩人 猶之可也 冒錄之多 至於世餘 豈非冗雜之甚乎 執輕賤隸 已授階分之秩 亦云濫矣 豈待盤血同盟 然後酬其勞乎 其他醫官司謁雜流 請勿留難夫從公論 並命削去 更令大臣元勳 商確勘定 使策勳重事 一出於正」⁴⁷⁾

이라 하여, 「宦豎之徒」「執輕賤隸」「醫官司謁雜流」등을 公論에 따라 削去하고 다시 勘定하기를 請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允許받지 못했고,⁴⁸⁾ 이에 司憲府가 다시 啓를 올리고⁴⁹⁾ 또 經筵에서도 언급되고 있었다.⁵⁰⁾ 이러한 분위기는 곧 당시 朝官들이 신분적으로 미천한 下人배가 자신들과 동렬에서 녹훈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편, 호종공신에 있어서 또 하나의 성격을 보여준다. 즉, 宣祖 개인의 감정이 호종공신 책훈에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은 호종공신이 임난극복의 유공자 녹훈에서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王世子 녹훈은 당시 領議政 李德馨·驚城府院君 李恒福 등 大臣들에 의해 거론되었다.

「翊運諸勳 磨鍊等第 李查考忠勳府錄卷前列 則定社功臣 太宗大王以靖

46) 上揭 4月 甲寅條.

47) 『宣祖實錄』卷 165, 宣祖 36年 8月 庚子條.

48) 上揭 8月 庚子條 참조.

49) 『宣祖實錄』卷 165, 宣祖 36年 8月 庚子.

憲府啓曰(前略) 國家策勳之舉 不宜若是 其輕忽也 至於中官近習之徒 執御雜類之輩 雖曰有扈從之勞 豈可與之 共指山河 同歆盤血乎 非但國家之羞 將不免 後世之譏議 此臣等之所以不避 煩瀆論列 而不能已者也(下略).

50) 『宣祖實錄』卷 165, 宣祖 36年 8月 己酉條 참조.

安公居一等指導首 今者 王世子 有 屬衛廟社之功 似當依舊例處之(下略)」⁵¹⁾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王世子 녹훈은 애초 거론되지 않고 있다가 호종공신의 等第를 磨鍊하기 위하여 錄卷前例를 살펴보다 太宗이 王位에 오르기 前 靖安公一等에 녹훈되었음을 발견하고 廟社主를 호위한 王世子を 호종공신에 녹훈하도록 건의하였고, 이에 宣祖는 「考故事前規處之」라 답함으로써⁵²⁾ 논의가 시작된다. 이후 錄勳大臣들은 故事前規를 살펴보고 太宗이 녹훈되었을 때는 世子에 책봉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결정을 보류하였다.⁵³⁾ 하지만 근거할 만한 前規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조 자신도 世子を 功臣에 녹훈하는 것이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⁵⁴⁾ 녹훈에 대하여 번거로운 논의가 그치지 않아 宣祖는 이에 자극을 받고 王子 녹훈을 削去하라는 傳旨를 내렸다.

「備忘記曰 前日欲與面議勘定未及 言官論之 方論之事 難於徑議 今煩論不已 既允別無面議之事 故不爲此意知悉 此王子雖慮從 豈屑於此乎 先爲削去 其餘人 終始慮從 及奏請兵外 皆削去」⁵⁵⁾

호종공신에 녹훈되는 것이 王子에게 어찌 달가운 일이겠느냐는 질책과 함께 내려진 이 削去의 命은 호종공신의 선정 폭을 終始慮從人과 請兵人으로 좁히고 있다.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

宣祖의 이와 같은 심기 때문에 공신책훈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던 듯하다. 이러한 사정은 功臣都監이 올린 다음의 啓에서 엿볼 수 있다.

「功臣都監啓曰 伏承聖教 王子錄勳削去之命 猶未收回 臣等不勝惶恐未安

51) 『宣祖實錄』 卷 163, 宣祖 36年 6月 庚戌.

52) 上揭 6月 庚戌條 참조.

53) 『宣祖實錄』 卷 163, 宣祖 36年 6月 庚戌.

54) 『宣祖實錄』 卷 164, 宣祖 36年 7月 丙辰.

備忘記曰……世者儲貳也 欲封爲功臣 思之得無過乎 言于大臣 尹暉以弘文館言啓曰……臣等謹接 綱目唐高祖記……肅宗記……此外 西漢東國諸史中……皆無可據之文 終未得考出 敢啓 傳曰 知

55) 『宣祖實錄』 卷 165, 宣祖 36年 8月 庚子.

之至…伏願垂收前命 以完盛典 臣等不勝區區 敢此再稟 傳曰 既爲削去 不可徑舉」⁵⁶⁾

功臣都監은 宣祖에게 「王子錄勳 削去之命」을 철회하여 달라고 간청하였는데 철회되지 않자 극히 불안하다면서 재차 削去之命을 거두어 주기를 쟁하고 있다. 그러나 宣祖는 분명한 태도로써 거절하였다. 宣祖의 이러한 태도는 그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⁵⁷⁾ 이 무렵 世子削去에 대한 宣祖의 입장과 관련하여 당시 史臣은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다.

「史臣曰 人主一言 國家安危之所判也 使削去王子之教 果出於至公至正 則固是矣 而辭意之間 多有弗色色 如人心極險 此非保全等語 尤不知指何而言也 王言一下 人情疑懼 國事可知 可勝嘆哉」⁵⁸⁾

宣祖의 王子 削去는 「至公至正」한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宣祖의 언동에는 불만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위기는 호종 공신의 책훈명분이 임난극복 유공자에 대한 論功行賞인 이상 그 名분에 합당하게 시행하려는 노력과 당시 정치체제가 王權專制社會라는 시대적 제약이 뒤엉켜 나타나는 것이겠다.

다음은 中路往還者 및 기타 有功문제이다. 이들은 대체로 壬辰年에 작성된 扈從人 單子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功臣都監에서

「功臣都監啓曰 扈從功臣 則有當初啓下單子 故就其中 稍有司議者 及單子名無 而亦有可議擬者 並爲其稟矣」⁵⁹⁾

라고 할 때 「單子名無 而可議擬者」가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參錄 문제는 애초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參錄 기준이 특정한

56) 『宣祖實錄』卷 166, 宣祖 36年 9月 庚申.

57) 『宣祖實錄』卷 172, 宣祖 37年 3月 乙亥.

備忘記曰 前日面對時 王子削去事 再三言之 此出於肝膈 非苟爲也 文武應參之人皆被其論 稚兒何有於此功哉 當此人心 極險之時 此非保全之道 君子愛人以德 宣從子言 先爲削去 且王子 位已隆矣 錄勳安用 視之不啻如一點浮雲矣

58) 上揭 3月 乙亥.

59) 『宣祖實錄』卷 159, 宣祖 36年 2月 壬辰.

공적에 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功臣都監에서는 朝臣間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채 宣祖의 재가를 청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功臣都監啓曰 錄勳一事 臣等反覆商議 則群議不一 自下擅便爲難 如李覺·奏孝男·宋康·高曦·李應順 似是終始扈從 參錄與否 何以爲之(中略) 請兵請糧使臣 則依教磨鍊矣 各行奔走周旋譯官 雖與使書狀有異 而表表之人 亦爲參錄乎 尹澗·趙公瑾 雖不在當初書啓之列 而似是終始扈從 參錄與否 何以爲之 傳曰 李覺既云落後自往 則難以參錄 但不知之事矣 奏効男事 予不能知之 察處可矣 宋康·高曦 若自初扈從 至於寧邊博川 因除職之故而論以落後 不論其功 則誠非其情 明爲失當矣 李應順之事 亦如此矣(中略) 請兵請糧使臣 不能獨爲 則傳語譯官 亦可並錄 但勿猥濫 尹澗·趙公瑾 自上不能知之 更爲詳察 得實處之 爲當」⁶⁰⁾

功臣都監은 李覺·奏孝男·宋康·高曦·李應順과 尹澗·趙公瑾이 비록 壬辰年 單子에 기재되지 못했지만 거의 終始扈從과 다름없다면에서도 參錄與否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 請兵請糧使臣이 參錄되었으니 이들과 함께 수고한 譯官 중 「表表之人」을 녹훈함이 좋지 않겠는다는 의견을 품신하였고, 이에 선조는 宋康·高曦·李應順의 경우 公務로 인하여 호종대열에서 落後된 만큼 參錄함이 마땅하고, 또 譯官중 有功者도 請兵請糧使臣과 並錄함이 좋겠다고 하고, 奏孝男·尹澗·趙公瑾은 그 행적을 알 수 없으니 詳察하여 처리하라고 했지만 李覺은 公務와 관계없이 사사로이 落後했음을 들어 參錄不許의 뜻을 표명했다. 李覺은 宣祖 34년이 공신책정 논의에서도 행적상의 의혹 때문에 宣祖의 윤허를 받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적상의 의혹이란 壬亂, 初期의 위급한 상황에서 호종대열이 都城을 나서기도 전에 도주하거나 호종 중도에 빠져나간 朝臣들처럼 「君臣之義」나 「爲國之誠」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고 생각된다.

60) 「宣祖實錄」 卷 159, 宣祖 36年 2月 己亥.

宣祖의 이와 같은 李覺不錄의 조치가 조정대신에게 충분히 납득되지는 못했던 듯 재차 거론된다. 領議政 李德馨·鰲城府院君 李恒福과 左右議政 및 大提學·右參贊의 啓文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前者 李希得 自京扈從 中間因公事出使 遷入義州 係是 自京扈從之因故取稟 而李覺以終始扈從之人 及於平壤賊退前 除官病逆以終往東宮之故 不見參錄 則李希得見參 群議頗以爲未穩」⁶¹⁾

李覺은 終始扈從人으로서 平壤을 탈환하기 전에 官職을 제수받았지만 病으로 인하여 逆職되었고, 그후 東宮을 陪從했기 때문에 參錄이 마땅하다는 것이며 더우기 李覺과 비슷한 경우의 李希得은 參錄되면서 그만이 不錄된은 公평하지 못하다는 설명이지만 宣祖의 뜻을 바꾸지는 못했다.⁶²⁾

대신들의 녹훈에 대한 입장은 公平을 유지한다는 데 있었다. 이미 參錄된 인물과 동등 혹은 유사한 경우라면 「參則並參 削則並削」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며, 그러한 입장에서 李覺 이외에도 柳夢鼎을 거론하여 參錄시켰다.⁶³⁾ 그러나 이러한 大臣들의 參錄 원칙의 적용은 參錄者를 대폭 증가시켜 朝臣의 불만을 야기시켰고, 이는 內官下人의 參錄에 대한 불만과 함께 公心책훈 전체에 대한 재검토 문제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원래의 호종공신 선정원칙인 終始扈從과 請兵으로 한정한다는 결정이 宣祖 36年 8월에 내려지게 된 것이다.⁶⁴⁾ 그리고 이후의 논의 즉 선조 37年 2월부터 7월의 확정기까지 거론되는 문제는 주로 앞에서 거론되었던 것을 다시 검토하는 성격을 띤다.⁶⁵⁾ 그러므

61) 『宣祖實錄』 卷 163, 宣祖 36年 6月 庚戌.

62) 上揭 6月 庚戌條 참조.

63) 前揭 6月 庚戌條 참조.

64) 注 55) 宣祖 36年 8月 庚子條 備忘記 참조.

65)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겠다.

① 『宣祖實錄』 卷 171, 宣祖 37年 2月 辛丑

「德馨等引對後啓曰臣等上年 等第磨勘入啓時已爲反覆商確 磨鍊以啓 令者更爲會洞參詳 別無異儀但其中 沈喜壽 柳夢鼎 李希得 金應鐵 上年削去事 已爲啓下而未及付標 鄭運 洪汝栗 李奉貞 其時有收錄之命 而亦未及付標 故今追書矣 申點 李元翼 崔興源 權應錄 金時敏 李廷龍 李億祺 黃維權時既有擲前傳教 並爲仍存 宋言慎 亦是當初特命收錄之人 同是恩命 何以爲之 宋康 高曦 中路除郡守

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고 절을 바꿔 다시 호종공신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宣武功臣의 책훈논의는 宣祖 34年의 논의에 비하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扈聖功臣 논의와 마찬가지로 宣祖 35年 4月부터 同王 36年 8月까지 그 參錄 대상이 확대 되다가 同年 8月 臺諫의 過濫 논의와 함께 축소된다.

공신책훈 논의의 재개와 함께 備邊司 郎廳은 大臣의 의견을 밝히는 데 거기에는 宣祖 34年 논의에서 언급된 李舜臣·元均·權慄이 모두 전사 하였으므로 宣武功臣의 마련을 주관할 자가 없다는 문제와 함께 그때까지 선정된 대상이 지나치게 忽略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備邊司郎廳 以大臣意啓(前略)征倭功臣 則權慄 李舜臣等 俱已身死 此外主管磨鍊之人 臣登亦未知某人爲可(中略)但征倭參錄者 示扈從諸臣 過爲忽略 則後日將士之心 不無缺然 亦爲可慮 敢並稟 傳曰…且日戰將士 雖不可不錄 我國將士 實無卻賊之功 其中參酌 得宜磨鍊 不可猥濫」⁶⁶⁾

즉 征倭武將의 參錄이 扈從功臣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략하여 후일 將士들에게 불만이 없지 않을 것이 염려된다는 것인데, 이에 宣祖는 적절하게 參錄시키라고 下敎함으로써 사실상 宣武功臣 선정논의가 확대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征倭有功者의 녹훈은 功臣都監에서 주관하게 된다. 여기서 맨 먼저 거론된 것은 「順安之功」 즉 順安陣을 지킨 유공자로서 그 元帥인

不得入義州論以非終始風從 而減去則似冤 何以爲之(中略) 恢復之功 全在於天兵 則譯官並不收錄 不無冤悶 何以爲之 司謁鄭京信事 則既達於堂前 無論其任之真假但取勞苦 則此人亦 何以爲之 敢稟 答曰 宋言慎 宋康 高訢 仍存爲可 鄭京信若然則亦可收錄 譯官事 誠亦有勞 但臺諫之論 亦可採用 譯官錄於原從一等似當

② 『宣祖實錄』 卷 175, 宣祖 37年 6月 庚子

「三啓曰 扈從諸臣中 崔興源 李元翼 柳永慶等 大駕西幸前數日 奉使西路 迎駕於中途仍爲扈從 宣力効勞 不下於諸臣 而只奉命先行之故 並存削去之類 司謁鄭京信 以大駕在義州時 爲假任 故不得參於錄勳 無問受任真假 終始扈從 則明矣 此人等 皆在可議之中 何以爲之 答曰 允 不得已者外 臺諫之言 既已允下 違之爲難 鄭京信 臺諫以爲不可似難追錄」

66) 『宣祖實錄』 卷 152, 宣祖 35年 7月 壬午.

金命元 대신 李元翼을 추천한 일이다.

「功臣都監啓曰 順安之功 所以捨金命元 取李元翼者 平壤失守之後 蒼黃潰裂 無所倚着 而李元翼能聚本道之兵 以成陳形 故大駕在義州時 人皆以爲遮截順安及三縣 乃元翼之力 金命元雖爲元帥 三處見退 來此駐劄而收拾 遮截之功 不及於元翼 故如是爲稟矣 傳曰 知道」⁶⁷⁾

壬辰年 平壤을 지키지 못하여 兵卒이 모두 흩어졌을 때 李元翼이 당시 黃海道 巡察使로서 흩어진 병사를 모아 陣形을 갖추므로서 「順安及三縣」에서 賊路를 遮截하였고 金命元은 비록 元帥였지만 敗退했다는 것이 元帥 金命元 대신 李元翼에게 順安之功을 추천하는 이유였다.

이외에 陸將으로서 永川을 공격하여 左道를 보전한 權應銖, 晉州城을 수비한 名將으로 倭國에까지 알려진 金時敏, 金時敏이 전사한 후 계속하여 晉州城에서 「力前郟賊」하였던 李光岳, 「對陣克捷之功」은 없지 만 수년에 걸친 「枕戈之勞」의 金應瑞와 高彥伯, 權慄의 中衛將인 趙倣이 거론되었고, 海上之捷의 李舜臣·元均의 偏將으로서 각각 權浚·李純信·安衛·裴興立과 李雲龍·禹致續이 추천되고, 全羅水使로서 初戰에는 不參했지만 그후 李舜臣·元均과 시종 同參하였던 李億祺가 논공대상으로 언급되었고, 이때 義兵으로서는 慶尙右道の 보전에 공로를 세운 郭再祐만 추천되었다.⁶⁸⁾

그러나 이와같은 功臣都監의 啓에 대하여 宣祖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였다.

「傳曰 我國將士之禦倭 正如驅羊以攻虎 李舜臣·元均 海上之捷爲首 此外權慄之戰幸州 權應銖之復永川 差強人意 其餘無聞焉 或其所稱能事 不過日僅守一城而已 其所論功 當從廷議 但必以至公 毋使猥濫 且若論枕戈之勞 則似不止金高兩將 並參酌施行」⁶⁹⁾

宣祖가 그 공적을 인정한 것은 李舜臣·元均·權慄·權應銖와 金應

67) 『宣祖實錄』卷 159, 宣祖 36年 2月 己亥.

68) 注 67)과 同.

69) 注 67)과 同.

瑞·高彥伯뿐이고, 나머지는 조정의 의논에 따라 결정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을 뿐이며 더우기 「但必以至公 毋使猥濫」은 조정의 논의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무렵 史臣이 「豐於從臣而略於戰士 可謂酬報之道矣」⁷⁰⁾라 표현하고 있는데서도 확인된다.

그후 1개월이 지나자 공신도감은 宣祖의 傳敎에서 功이 인정된 權應銖와 관련하여 朴晉, 金應瑞, 高彥伯과 功이 유사한 鄭起龍·韓明璉·李守一·金太虛·金應緘·李時彥을 추천하였다.⁷¹⁾ 하지만 宣祖는 여전히 「陸將은 특별히 摧鋒한 일이 없는데 이처럼 參錄하면 猥濫을免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따로 加資陞叙하면 可하며 勳을 함부로 할 수 없다」⁷²⁾하여 征倭有功者중 특히 陸將의 녹훈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宣祖 36年 4월까지 功臣都監에서 추천된 武功者는 모두 26人에 이르렀지만 이들이 모두 宣祖의 윤허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⁷³⁾ 이리하여 이들 26人을 중심으로 「更議參商」이 진행된다. 대상은 그 錄勳이 인정된 金時敏, 李光岳과 舟師 徧禎⁷⁴⁾이었다. 녹훈도감은 먼저 金時敏과 李光岳의 녹훈이 허락되었으므로 이와 相等한 공적을 남긴 延安城 수비의 李廷範을 녹훈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말하고 이어서 舟師 徧禎과 李億祺의 參錄을 거론하였다.⁷⁵⁾

李舜臣과 元均은 爭功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우선 主將인 李舜臣과 元均의 軍功等第는 신뢰받지 못하고 兩將의 徧禎가운데 각각 2人씩 參錄되고 全羅右水使 李億祺는 海上之戰에 참가했음이 확인되어 參錄되었다.

문제는 陸將이었다. 宣祖가 高彥伯의 功을 인정했으므로 이와 功勞가

70) 注 67)과 同.

71) 『宣祖實錄』卷 160, 宣祖 36年 3月 庚申.

72) 上揭 3月 庚子條.

73) 『宣祖實錄』卷 161, 宣祖 36年 4月 甲寅.

74) 注 71) 3月 庚申條

「傳曰 金時敏等 依營 舟師 徧禎 並錄量處」

75) 前揭 宣祖 36年 4月 甲寅條 및 『宣祖實錄』卷 163, 宣祖 36年 6月 庚戌 참조.

相等한 다른 陸將의 參錄이 공신도감에 의해 啓請된 것이다.

「陸將 別無大段摧鋒陷陳之功 果如聖教 但高彥伯 雖有捕倭護陵之功 而功勞之與彥伯相等者 亦多有之 彥伯既參 而他人俱不參 則衆情必憾冤 且扈從 則從優磨鍊 而征倭 則如是略小 後日之虞 亦不可不念 前日聚稟陸將中 更爲酌量括出 尤有功勞者 並錄何如 傳曰 允 此人等功勞 予無由知之 十分參量 必以公 必以正 無致人議爲便」⁷⁶⁾

즉 高彥伯에게 비록 「捕倭護陵」의 功이 있어 參錄되지만 그와 相等한 다수의 功勞者가 不參될 경우 원한을 품게 되리라는 것과 扈從에 비하여 征倭가 略小하여 후일 武將의 불만이 싹들 염려가 있으니 지금까지 거론된 陸將중 「尤由功勞者」를 並錄하자는 것인데 이에 宣祖는 충분한 公正性을 전제하여 윤택하였다. 따라서 陸將의 參錄도 확대된 것으로 보이거나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 이후 나타나는 것은 扈從功臣과 마찬가지로의 削去之命이었다.

「備忘記曰…征倭 則李舜臣 元均 權慄 當爲一等 此外皆削去 高彥伯 則討賊護陵 不但有功 臣子豈敢言削 可仍言于都監」⁷⁷⁾

李舜臣·元均·權慄 이외는 모두 削去하라는 것과, 高彥伯은 「護陵」의 功이 있어 有功者로만 취급될 수 없으니 臣下로서 함부로 削去를 말하지 못한다는 宣祖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와 같은 宣祖의 傳旨는 宣祖 37年 6月 庚子日의 논의 속에서 철회됨이 확인되며, 이 논의에서 공신책훈은 확정되었다. 먼저 元勳大臣들은 宣武功臣으로 李舜臣·元均·權慄 外 高彥伯만 선정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削去된다면 武將들의 불만이 커져 후일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는 의견을 품신하였고, 宣祖는 「啓意甚當 武將及扈從類可議者書啓」를 下命하였다.⁷⁸⁾ 이에 그 즉시로 書啓작업이 진행되어 무려 4

76) 前掲 宣祖 36年 4月 甲寅條.

77) 『宣祖實錄』 卷 165, 宣祖 36年 8月 庚子.

78) 『宣祖實錄』 卷 165, 宣祖 37年 6月 庚子.

번의 啓를 올려 녹훈단자를 완성시켰다.⁷⁹⁾ 논의되는 대상이 모두 削去된 명단에서 거론되었으므로 그 공적의 심사가 용이하였던 때문이겠다.

III. 屬聖功臣

屬聖功臣은 壬辰年에 작성된 單子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 單子는 당시 宣祖의 屬從에 참여한 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屬聖功臣에 녹훈된 명단과 비교될 때 호성공신책정 논의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單子는 현재 전해지지 않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임진년 당시 兵曹佐郎으로서 宣祖를 屬從했던 朴東亮의 文集 『寄齋雜記』에 기재된 호종인 명단을 이용하기로 한다. 자료에서 생기는 한계가 없지 않으나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朴東亮은 「모든 호종官員들은 서로 분주하여 그 오고 가는 것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으나 우선 衙門을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⁸⁰⁾면서 94명의 명단을 기재하였다.⁸¹⁾ 이들 94명을 채훈된 屬聖功臣의 명단과 비교하면 58명이 탈락, 36명이 녹훈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寄齋雜記』所錄 屬從人物일람표

일련 번호	官 職	姓 名	호성공신 책정여부	일련 번호	官 職	姓 名	호성공신 책정여부	일련 번호	官 職	姓 名	호성공신 책정여부
1	領議政	李山海	×	2	左議政	柳成龍	○	3	右議政	李陽元	×

79) 여기서 언급된 대상자는 모두 宣武功臣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전체 명단은 2절에 제시된 선무공신 일람표와 동일하다.

80)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고전구역총서 『燃藜室記述』 15, 宣祖條 古事本末, pp. 48~50, pp. 643~644 「諸從官 不相倫次 其來其去 不能盡記 姑別書衙門如左」

81) 正四品 이하는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호종인 수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上揭書 pp. 48~50, pp. 643~644 참조)

<閑散官 從行者>

65	杞城君	俞泓	×	66	海平君	尹根壽	○	67	海原君	尹斗壽	○
68	護軍	李山甫	○	69	護軍	柳根	○	70	護軍	洪進	○
71	護軍	洪麟祥	×	72	護軍	閔澹	×	73	護軍	尹自新	○
74	護軍	黃廷式	×	75	護軍	黃廷立	×	76	護軍	李璫	×
77	護軍	成壽益	×								

<各司官 從行者>

78	大司成	任國老	×	79	直講	沈友勝	○	80	博士	李効元	×
81	司僕僉正	朴應寅	×	82	內乘	朴東彦	×	83	內乘	安澗	○
84	僉知	柳希霖	○	85	僉知	鄭崑壽	○	86	司贈奉事	李慎誠	×
87	拿樂直長	李慶全	×	88	宗簿僉正	閔善	×	89	奉常奉事	洪鳳祥	×
90	宣傳官	崔賁	○	91	武兼	韓淵	○				

<世子從官>

92	輔德	沈岱	○	93	弼善	沈友正	×	94	文學	李尙毅	×
95	說書	李光庭	○	96	副率	姜綱	○				

<표 1>에 나타난 호종인 94명중 녹훈에서 탈락된 58명은 또 탈락사유가 분명한 35명과 탈락사유가 불분명한 23명으로 나뉘는데, 탈락사유가 분명한 35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호종인중 탈락사유가 밝혀진 35명의 일람표

일련번호	관 직	성 명	행 적
1	右議政	李陽元	留都

2	吏曹正郎	鄭光績	江原御史 未遷
3	禮曹判書	權克智	卒(四月二十八日)
4	禮曹佐郎	李慶流	死于尙州
5	兵曹正郎	李弘老	到開城落後
6	同 上	宋 諄	坡州落後
7	同 上	柳熙緒	金命元 從事官去
8	兵曹佐郎	徐 省	到坡州落後
9	同 上	李 覺	到寧邊從世子
10	兵曹佐郎	崔 璫	平壤病去
11	工曹判書	李德聲	賊中未回
12	執 義	權 懷	至平壤上疏去
13	特 平	李慶琪	至博川不辭去
14	同 上	南 璫	初 不 來
15	大司諫	金 瓚	至平壤上疏去
16	獻 納	李廷臣	寧邊不辭去
17	正 言	鄭士偕	初 不 來
18	同 上	黃 鵬	平壤落後
19	修 撰	任蒙正	不 來
20	副修撰	尹 暹	尙州死
21	同 上	朴 篋	同 上
22	佐副承旨	盧 稷	平壤落後
23	同副承旨	閔汝慶	平壤落後
24	注 書	朴鼎賢	安州不辭去
25	注 書	任就正	同 上
26	奉 教	奇自獻	追到平壤
27	侍 教	尹敬立	上疏赴任所
28	同 上	趙存世	安州不辭去
29	檢 閱	金善餘	至安州不辭去
30	檢 閱	姜秀峻	平壤上疏去
31	同 上	洪麟祥	到平壤上疏去
32	大司成	任國老	平壤上疏去

33	司膽奉事	李 愼 誠	坡 州 落 後
34	拿樂直長	李 慶 全	平 壤 落 後
35	宗簿僉正	閔 善	坡 州 落 後

이들 35명의 행적을 보면 호종중 이탈자 24명, 애초 호종하지 않은 자 10명, 그리고 追到者 1명이고 중도이탈자 24명중 從事官으로 떠난 자(1), 世子の 陪行을 위해 떠난 자(1), 任所로 부임한 자(1)의 3명은 모두 公務로 因하여 이탈한 자이며 나머지 23명은 이탈사유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최소한 公務로 떠난 것이 아님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 대다수는 애초부터 호종하지 않거나 중도에 이탈한 이유로 인해 호종공신 책훈에서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호종인으로 『寄齋雜記』에서 기록되어 있으면서 녹훈에서 탈락된 자 가운데 그 사유가 불분명한 28명을 검토해야 하는데, 『寄齋雜記』에 그 사유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기록을 통하여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13명을 정리하여 <표 3>으로 만들었다.⁸²⁾

<표 3> 寄齋雜記의 호종인 중 그 사유가不明한 채 책훈에서 누락된 자

일련 번호	관 직	성 명	녹 훈 제 외 사유
1	領 議 政	李 山 海	1592년 호종 도중 개성에서 兩司의 탄핵으로 파면, 백의로 평양에 갔으나 다시 탄핵되어 평해에 付處.
2	左 贊 成	崔 滉	1592년 왕을 호종하다가 왕비·세자빈을 陪從.
3	吏 曹 正 郎	趙 挺	1592년 왕을 호종하다가 輔德으로 世子를 호종.
4	兵 曹 參 議	鄭 士 偉	1592년 평양까지 왕을 호종. 이후 世子를 따라 江界로 갔다가 益山에서 사망.
5	兵 曹 參 知	黃 滉	1592년 왕을 호종하다가 募運使로 軍糧수송을 위해

82) <표 3>은 「國朝人物考」·「燃藜記記述」·「宣祖實錄」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대열에서 이탈.
6	弘文館修撰	朴東賢	1592년 왕을 호종하다가 落後.
7	右承旨	李廷馨	1592년 왕을 호종하던 중 개성에서 개성부 유수로 특진하여 개성을 수비.
8	杞城君	俞泓	1592년 왕을 호종하던 중 博川에서 落後世子 호종, 1594년 좌의정으로 왕비를 해주에 호종한 뒤 사망.
9	吏曹參議	李廷醜	1592년 왕을 호종하다가 동생 이정형과 개성을 수비.
10	兵曹正郎	李弘老	1592년 왕 호종 도중에 도주.
11	漢城判尹	洪汝諱	1592년 왕 호종 도중 知中樞府使로 북도 순찰사를 지냈으나 대간의 탄핵으로 順川에 유배.
12	奉常奉事	洪奉祥	1592년 왕을 호종하다가 金命元 종사관으로 임진강 전투 중 사망.
13	舍人	尹承勳	1592년 왕 호종 도중에 應教로 善諭御史를 겸직해서 대열 이탈.

이들 13명 가운데 公務 혹은世子 및王妃의 陪從으로 호종대열을 떠난 자는 10명인데 사망자 및 유배자가 4명이므로 6명이 녹훈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이들 6명 중 俞泓은 녹훈논의에서 거론된 적이 있었던 인물이다.⁸³⁾ 이로 미루어 본다면 나머지 5명도 아마 행적상 의혹이 없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扈從人 중에서 녹훈에 탈락된 자는 대부분 애초부터 선조를 호종하지 않았거나 호종 도중 公務가 아닌 일로 落後한 자 혹은 公務로 인해 도중에 호종대열을 이탈했지만 그 행적상에 의혹

83) 『宣祖實錄』卷 135, 宣祖 34年 3月 辛酉.
 「備忘記曰(前略)俞泓則到博川而自爲落後歸於世子如此事人可能之其勤苦則至矣而若曰終始扈從則未也似不當並入(下略)」.

이 있는 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녹훈된 屬聖功臣의 행적과 대비되는 것이다.

끝으로 宣祖 37年 10월에 확정 발표된 호성공신 86명(1等 2명, 2等 31명, 3等 53명)의 명단과 행적을 <표 4>로 정리하여 두었다.

<표 4> 호성공신 분류표

官職	姓名	공신 등급	중시호 종부	任亂	당시의 주요 행적
都承旨	李恒福	1	○	1592년	병조판서로 이덕형과 明에 구원 요청 주장. 전국에 勤王兵 모집. 明軍을 先導 영접. 1593년 遠接使, 1594년 舟師大將 겸직. 1595년 吏曹判書, 兩館大提學, 知義禁府事 역임. 1597년 병조판서 재임 중 사임.
僉知	鄭崑壽	1	×	1592년	右承旨, 知敦寧府事로 明의 石星이 구원병 파견에 동의하게 함. 迎慰使로 明 經略 宋應昌 영접. 1597년 領中樞府事로 謝恩使가 되어 明에 감. 對明外交의 주축.
左議政	柳成龍	2	○	1592년	都體察使로 軍務를 총괄. 李舜臣, 權慄을 기용. 1593년 李如松과 함께 평양 수복. 충청·전라·경상 3도 체찰사, 영의정으로 군비 확충. 1598년 北人의 탄핵으로 관직 삭탈.
吏曹判書	李元翼	2	×	1592년	평안도 도순찰사로 피난길 선도.

1593년 평양탈환에 기여.
 1595년 우의정, 諸道 都體察使, 領元師府
 事 겸직.
 1598년 영의정으로 탄핵된 유성룡을 옹호
 하다 사직.

吏曹佐郎 李好閔 2 × 1592년 李元翼의 종사관, 遼陽에서 가서
 明 지원 요청.
 1595년 副提學으로 외교문서를 起草.
 1596년 參贊官역임.
 1596년 戶曹參判으로 奏聞使가 되어 明에
 감.

兵曹參判 沈忠謙 2 ○ 1592년 義州 피난을 역설.
 分朝의 명으로 成川에서 世子 호
 위.
 1593년 右賓客을 겸직해 軍량미 조달에 기
 여.

吏曹正郎 柳永慶 2 × 1592년 招諭御使로 士兵 모집.
 1594년 황해도 관찰사.
 1597년 知中樞府事로 가족을 피난시켜 처
 별.
 1598년 兵曹參判.

海平君 柳根壽 2 ○ 1592년 禮曹判書로 기용.
 問安使, 遠接使, 奏請使 등으로 對
 明 외교를 담당.

海原君 尹斗壽 2 ○ 1592년 御營大將, 左議政으로 義州 피난을
 실현.
 1594년 世子 호종. 三道體察使.
 1595년 判中樞府事로 왕비 호종.

護 軍 柳 根 2	○	1592년 吏曹參判. 1593년 都承旨로 민심 수습. 1597년 運糧檢察使로 군량미 수송을 담당.
護 軍 李 山 甫 2	○	1592년 吏曹判書로 明將 李如松을 적대. 北道·三南의 都檢察使로 군량 조달.
護 軍 洪 進 2	○	1592년 왕의 遼東 피난을 반대. 1593년 漢城府判尹에 승진, 서울에서 賑恤.
拿 令 鄭 姬 藩 2	○	不 明
武 兼 韓 淵 2	○	1592년 戶曹佐郎
左 參 贊 崔 興 源 2	×	1592년 都巡察使, 左議政 승진, 유성룡 파직 후 領議政에 기용. 世子를 江界에 배중.
左 承 旨 李 忠 元 2	○	1592년 應教, 司諫. 1593년 義州牧使 재직중 사망.
弘文館校里 李 幼 澄 2	○	1592년 應教, 司諫. 1593년 義州牧使 재직중 사망.
兵曹判書 金 應 南 2	○	1592년 副體察使. 1594년 左議政, 左議政. 1597년 按撫使로 재직 중 사직.
兵曹佐郎 朴 東 亮 2	○	1592년 都承旨. 1596년 吏曹參判으로 終至使가 되어 明에 감.
漢城右尹 朴 崇 元 2	○	1592년 漢城判尹으로 병사.
弘文館校里 沈 岱 2	○	1592년 副承旨, 경기도 관찰사로 서울 탈

환시 진사.

右承旨尹自新	2	○	1592년 宋廟署提調로 종묘神主를 松都에 埋魂, 1594년 知敦寧府事, 1597년 漢城府判尹, 工曹判書.
右副承旨申 集	2	○	1593년 兵曹參判, 평안도 병마절도사, 1595년 鐵山郡 탈옥사건으로 파직, 刑曹參判, 特進官.
信城君 珩	2	×	선조의 네째 아들. 1592년 義州에서 병사.
順遠君 瑋	2	×	
內 乘安 滉	2	×	1592년 敦寧府都正, 義州로 가던 중 江西 에서 병사.
直 講沈友勝	2	○	1592년 刑曹正郎, 正言, 持平, 1593년 陳奏使의 書狀官으로 明에 구원 요 청, 明의 經理 楊鎬의 행패에 항의해 파직.
海豐君 耆	2	○	1592년 왕을 호종, 廟主를 봉행.
順義君景 溫	2	○	同 上
順寧君景 儉	2	○	同 上
司 諫李 儼	2	○	1592년 副提學으로 義州에서 병사.
說 書李光庭	2	×	1592년 王 호종, 說書로世子 從官.
宗廟署令任發英	3	○	1592년 廟主를 모시고 의주로 호종, 武科 급제, 安州牧使, 1593년 運糧使로 군량수송.

大司憲李憲國	3	×	1592년 刑曹判書로世子를江界에호중. 1593년 漢城府判尹. 1597년 左參贊으로복수군조직.
左承旨柳希霖	3	○	1593년 同知中樞府事. 1594년 禮曹參判, 광해군의 庶務 관장을상소
宣傳官高 曦	3	○	1592년 郭山郡守. 1597년 貢稅轉運使.
右贊成鄭 琢	3	○	1593년 迎慰使로 明 經略 宋應昌 영접. 1594년 右義政. 李舜臣, 郭再祐, 金德齡 발탁.
吳定邦	3	○	1592년 富寧府使, 定平府使, 知中樞府使, 運經寺提調 역임.
掌 令李有中	3	○	1592년 왕을 의주로 호중.
宗廟署提李壽崐 調	3	×	1592년 博川에서 分朝할 때 세자를 따름. 1593년 병사(신성군 翊의 아들).
未 祥奇孝福	3	○	
" 崔 賓	3	○	
" 李應順	3	○	
" 崔應淑	3	○	
" 宋 康	3	○	
" 李廷綠	3	○	
" 金應昌	3	○	
" 柳肇生	3	○	

" 慶宗智 3 ○

" 李士恭 3 ○

" 楊舜民 3 ○

醫 官許 浚 3 ○

醫 官李公沂 3 ○

內 侍崔彥俊 3 ○

" 金 鳳 3 ○

" 金彥鳳 3 ○

" 林 祐 3 ○

" 朴春成 3 ○

" 金秀源 3 ○

" 辛大容 3 ○

" 趙龜壽 3 ○

" 白應範 3 ○

" 金俊榮 3 ○

" 金繼韓 3 ○

" 閔希實 3 ○

" 金良輔 3 ○

" 朴忠敬 3 ○

" 鄭漢璣 3 ○

" 金禮楨 3 ○

"	申應瑞	3	○
"	金靈信	3	○
"	金起文	3	○
"	梁子儉	3	○
"	崔潤榮	3	○
"	鄭大吉	3	○
"	朴夢周	3	○
馬醫	金應壽	3	○
理馬	全龍	3	○
"	吳連	3	○
"	吳致雲	3	○
"	李春國	3	○
"	李希齡	3	○
司謁	洪澤	3	○
內需司別坐	崔世俊	3	○

IV. 宣武功臣

宣武功臣으로 녹훈될 대상자는 대체로 선조 36年 2月과 3月에 걸쳐 선정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 선정된 대상자가 모두 녹훈된 것은 아니다. 同年 8月에 鷹聖功臣과 함께 「猥濫」의 논의 속에서 宣武功臣도 李舜臣·元均·權慄·高彥伯 이외에는 모두 削去되어⁸⁴⁾ 선조 37年 6月에

84) 『宣祖實錄』卷 165, 宣祖 36年 8月 庚子 참조.

재차 선정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는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선조 37년의 재선정은 모두 선조 36년에 선정된 명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선조 36년에 선정된 공신명단과 공적을 정리하여 선조 37년의 확장자 명단과 비교함으로써 宣武功臣 성격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선조 36년에 선정된 宣武功臣의 명단과 공적을 정리하면 다음 <표 5>·<표 6>과 같다.

<표 5> 1차전공 거른 대상자와 그 공적(시기: 宣祖 36年 2月 己亥)

성 명	공신책훈여부	공 적
李 舜 臣	○	海上之捷
元 均	○	海上之捷
權 慄	○	幸州之捷
李 億 祺	○	全羅水使로 初戰에는 불참, 이후 終始同參
權 應 銖	○	永川城 수비, 慶尙左道 보존
金 時 敏	○	晋州城 보존, 倭國에까지 명성을 떨침.
李 廷 穉	○	廷安全城, 적이 강화도에 통행하지 못하게 함.
李 光 岳	○	晋州城 전투에 昆陽郡守로 입성, 守城을 지휘.
權 浚	○	李舜臣의 裨將
李 純 信	○	同 上
安 衛	×	同 上
裴 興 立	×	同 上
李 雲 龍	○	元均의 裨將
禹 致 績	×	同 上

奇 孝 謹	○	同 上
趙 徹	○	幸州大捷에 中衛將으로 지휘.
金 應 瑞	×	敵과 대적시 勝捷의 功, 枕戈의 노고가 큼.
高 彥 伯	○	同 上
郭 在 祐	×	義兵將으로 慶尙右道 보존에 기여.

<표 6> 2차전공 거론시 추가된 대상자와 그 공적(거론시기 : 宣祖 36年 3月 庚申)

성 명	공신책정여부	공 적
朴 晉	×	平壤橫潰때 黃山을 보존, 軍兵을 수습하여 공격을 지휘. 權應銖를 永川으로 擇遣.
鄭 起 龍	×	力戰의 노고, 수륙 참전의 功.
韓 明 連	×	同 上
李 守 一	×	同 上
金 太 虛	×	同 上
金 應 絨	×	同 上
李 時 彥	×	同 上

<표 5>는 宣祖 36年 2月 己亥日에 거론된 19명의 대상자이고 <표 6>은 同年 3月 庚申日에 추가 거론된 7명의 대상자를 정리한 것이다.

<표 5>에 정리된 19명은 水軍으로 李舜臣과 그의 裨將 4명, 元均과 그의 裨將 3명과 李億祺 도합 10명과 9명의 陸將으로 구성되어 있다. 陸將 중에는 義兵將으로서 郭再祐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19명 중 선무공신에 책정되는 자는 14명, 탈락자는 5명인데 탈락자 5명은 李舜臣의

裨將 4명 중 2명과 元均의 裨將 3명 중 1명, 그의 金應瑞와 郭再祐로 되어 있다. 李舜臣과 元均은 海上之捷의 首功者로서 인정되어 그 裨將을 동등하게 2명씩 녹훈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고⁸⁵⁾ 金應瑞의 탈락은 녹훈을 위해 뇌물을 올린 것이 司憲府에 의해 지적된 것⁸⁶⁾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며, 義兵으로서 유일하게 녹훈대상자로 선정된 郭再祐는 녹훈이 소략하다는 지적 속에서 추가된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선조 36年 8월에 削去되어 익년 6月の 재논의에서 누락되었다.

끝으로 선무공신에 책정된 인물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선무공신 분류표

관 직	성 명	공신 등급	평가된 공적	任 亂	당 시	주 요	전 공
全羅左道 水軍節度使	李舜臣	1	海上之捷	1591년	全羅左道 水軍節度使로	左水營	관할. 1592년 玉浦, 泗川, 唐浦, 唐項浦, 閑山 島, 安骨浦 해전에서 승전. 1593년 부산·웅천에서 승전. 三道水軍 統制使 1597년 鳴梁해전. 1598년 露梁해전에서 戰死.
光州牧使	權 慄	1	幸州之捷	1592년	光州牧使로	龍仁전투	참전. 全羅 道 巡察使. 1593년 幸州山城에서 大勝해 都元帥가 됨. 1597년 明 제독 麻貴와 연합해서 蔚山에 서 대진. 1599년 病死.
慶尙右道 水軍節度使	元 均	1	海上之捷	1592년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玉浦해전	참전.

唐浦, 昆陽, 泗川에서 승전.

1593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좌천.

1597년 三道水軍統制使로 漆川島에서 패전. 전사.

謝恩使 申 點 2 請兵之功 1592년 明 병부상서 石屋에게 구원요청.
1593년 同知中樞府使로 평양 탈환 논의.
明 東征軍의 留兵糧銀 의논.
1594년 형조판서

訓練院 權應銖 2 永川城 1592년 永川城을 공격해서 성을 탈환.
奉 事 탈환 2차 경주성 전투에서 패배.
唐橋 전투에서 대승,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1593년 충청도 방어사 겸직

晉州牧使 金時敏 2 晉州城 1592년 진주목사로 泗川, 固城, 진해의
전투 적을 공격.
진주성 전투에서 戰死

吏曹參議 李廷龜 2 延安全城 1592년 황해도 招討使로 延安城 전투에서
之功 승전.
工曹參議, 嘉善大夫로 승격
1596년 충청순찰사로 이몽학亂 평정
1597년 황해도 초토사로 다시 延安 수비.

全羅右道 李億祺 2 海上之功 1592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水軍節度使 唐浦해전, 唐項浦, 栗浦, 閑山
島, 安骨浦 해전 참전.
1597년 元均 휘하에 左翼軍으로 참전.
漆川梁 패전, 戰死

관 직	성 명	공신 등급	평가된 공적	任 亂 당시 주요 전공
書 狀 官	鄭期遠	3	請兵之功	1592년 謝恩使의 書狀官으로 請兵을 탄원. 1596년 告急奏聞使로 日本의 제침을 明에 보고. 1597년 明 總兵 楊元의 接伴使로 南原城 함락시 戰死.
光州牧使	權 峽	3	請兵之功	1593년 강화도 교동에서 양곡 징수. 1597년 告急使로 明 兵部에 상황 보고, 원병파견에 기여, 戰用으로 焰硝, 硫黃, 麵, 牛筋을 가져옴.
典 籍	柳思瓊	3	請兵之功	1596년 告急請願使의 書狀官으로 發兵, 군량미 원조를 건의. 1597년 明軍을 영남지방에 인도.
寧遠郡守	高彥伯	3	陸戰之功	1592년 中和·大同江에서 패배. 楊州牧使로 利川에서 승전. 1593년 明軍의 嚮導로 서울 탈환에 기여. 1595년 양주·울산·比安縣 승전. 1597년 방어사로 황해도 방위.
昆陽郡守	李光岳	3	晋州城 전투	1592년 昌原城, 露峴전투. 1차 진주성 전투에서 左翼將으로 참전. 1594년 동래전투, 光陽전투에서 승리.
全羅道 助防將	趙 傲	3	幸州之捷	1592년 居昌新倉, 秋風驛에서 패배. 禿城山城전투에 전라도 조방장으로 참전.

				1593년 幸州山城에서 대승. 1596년 훈련대장.
中 衛 將	權 浚	3	海上之功 (이순신의 裨將)	1592년 李舜臣의 中衛將으로 玉浦, 泗川, 閑山島, 釜山浦해전 참전. 1957년 忠淸水使.
防 踏 鎮 僉 節 制 使	李 純 信	3	海上之功 (이순신의 裨將)	1592년 李舜臣의 中衛將으로 唐項浦, 閑 山島, 釜山浦, 웅천에서 승리. 1598년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露梁해전 에서 대승.
南海縣令	奇孝謹	3	海上之功 (元均의 裨將)	1592년 元均의 裨將으로 泗川해전에 참전. 船艙에 功. 唐項浦해전에 참전.
玉浦萬戶	李雲龍	3	海上之功 (元均의 裨將)	1592년 元均의 裨將으로 玉浦, 永登浦, 泗川, 安骨浦, 加德浦에서 승 전. 1596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책훈된 宣武功臣은 모두 18명이다. 이 가운데 力戰有功者는 14명이고 나머지 4명은 明에 請兵한 功을 녹훈한 것이다. 선무공신 1等으로는 李舜臣·元均·權慄이 책훈되었고, 2等은 請兵에 가장 큰 功이 인정된 申點과 永川城 탈환의 權應銖, 晋州城전투의 金時敏, 延安城전투의 李廷璣, 全羅右水使 李億祺, 모두 5명이며, 3等에는 請兵有功者 3명과 李舜臣·元均의 裨將 각각 2명씩, 晋州城전투의 李光岳, 幸州城전투의 趙倣, 그리고 王陵을 지키는 공로로써 특별한 武功없이 參錄된 高彦伯 포함 9명이 녹훈되었다.

V. 結 語

壬亂이 종결되고 그 3년 후인 宣祖 34年 3월부터 壬辰年 義州播遷時 宣祖를 扈從했던 諸人과 壬亂중 力戰有功의 武將을 功臣에 책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개월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功臣策勳 논의는 同年 5月 禮曹判書 柳根의 「以非時停止」 筭子로 인해 중단되어 1년 후인 宣祖 35년 5月 再開되어 宣祖 37年 6月 무렵까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同年 10月 扈聖功臣과 宣武功臣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扈聖功臣은 壬辰年 西行길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무릅쓰고 시종일관 宣祖와 고통을 함께 했던 扈從人에 대한 君王의 보답이란 측면에서 이미 義州에서 그 錄勳을 下敎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녹훈 성격은 다분히 宣祖의 私的인 감정 속에 위치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시행이 지체되다가 壬亂이 克服된 시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는 사정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녹훈은 國家의 莫重之事로서 취급되기 때문이다. 扈聖功臣의 녹훈에는 私的인 측면과 公的인 측면, 즉 「君臣之義」와 「爲國之誠」이 並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公的인 측면이란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 중, 양반신분의 기초 위에서 성립된 王朝국가라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扈聖功臣 책훈 논의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 즉, 宣祖와 世子와 諸宮陪行下人の 參錄 여부와 「中路往還人」 가운데 取捨選擇하여 參錄시키는 문제 그리고 請明兵使臣의 역할 부자 등은 녹훈에 나타나는 公·私的의 이중적 성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扈從下人은 그들의 직책상 終始扈從人이 대부분이므로 녹훈기준을 終始扈從에 한정할 때 그들의 參錄은 필연적이며 또 당연한 책정이 되지만 그들이 國家 차원에서 행한 역할은 아무래도 미약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선조나 朝臣間에 심각한 의견대립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하여 言官이 심하게 반발하고 王世子의

녹훈마저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무렵, 宣祖는 終始扈從과 請明兵使臣을 제외한 모든 參錄人을 削去하라는 내용의 宣祖 36年 8月의 錄勳削去命을 내릴 수 있었다. 이는 朝臣들 상당수가 公務로 인하여 扈從대열에서 이탈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위협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실제 그후의 논의에서 宣祖의 下人參錄에 대한 반대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이 모두 錄勳되었던 사정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中路往還人」의 參錄은 대개 君臣의 義를 저버리지 않은 朝臣의 경우 그 爲國之誠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 호종공신의 성격이 爲國之誠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각되면서 그 공로가 높이 평가된 것은 請兵糧使臣이었다. 이 시기 宣祖 및 朝臣들은 모두 王亂克服에서 明軍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녹훈이 호종공신과 함께 되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의논되었다. 실제 호성공신의 元勳인 鄭崑壽는 바로 請兵糧의 功勞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扈聖은 그 성격상 爲國之誠보다는 君臣之義 측면에 보다 큰 의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鄭崑壽이외의 請兵糧有功者가 모두 宣武功臣으로 최종 녹훈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겠다.

한편 宣武功臣은 녹훈 초기부터 호성공신에 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 하나는 宣祖가 애초부터 朝鮮軍의 能力을 不信하였고, 특히 陸將에 대한 不信이 뿌리깊었던 점이다.

따라서 宣祖는 宣武功臣의 선정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武功의 主役들인 李舜臣·元均과 權慄 이외에는 녹훈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 점은 宣武功臣이 소략하게 책정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이들 주요 武功의 主役이 모두 戰死하였으므로 武將들이 녹훈 선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宣武功臣의 선정은 모두 功臣都監에서 주관하였다. 이들은 各將帥들의 狀啓를 기초로 宣武功臣의 추천에 임했지만 언제나 선조의 소극적인 입장에 직면하여 상당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26명의 武將을 추천한 것은 朝臣들에

대한 武將들의 불만을 느끼면서 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26명의 녹훈후보자는 宣祖 36年 8月の 削去之名으로 李舜臣·元均·權慄 外에 高彦伯만이 參錄되고 모두 削去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그 후의 논의는 功臣都監이 宣祖의 意中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천하게 됨으로써 請兵糧有功者 4명을 제외하면 겨우 14명의 武將을 녹훈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李舜臣·元均·權慄과 그들의 麾下 5명을 제외하면 晉州城의 金時敏·李光岳 2명과 永川의 權應銖, 延安의 李廷瓚, 그리고 高彦伯이 그들인데 가중 高彦伯은 武功보다는 護陵의 功이 높이 평가되어 녹훈되었으므로 실제 녹훈은 13명에 그치는 지극히 소략한 것이었다.